
하늘정원 입소관련 사항

제 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11명으로 한다.
2.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하늘정원 홈페이지(www.하늘정원.kr)를 통한 기관홍보
 - 나. 상담 - 전화, 방문 상담, 카카오톡 : 카카오톡검색'하늘정원요양원' (skygarden)
 - 다.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 소개
 - 라.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 마.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모임(지역 회의, 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 바. 기관 홍보용품 (USB 및 수건) 을 제작하여 지역에 홍보한다.

제 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가. 시설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은 달리 할 수 있다.
- 나.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 다.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정등급변경시, 감정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 가.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나.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

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3.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의 개인부담금액이 변동 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급여비를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12% , 8%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불임 [당해연도 장기요양비용안내]과 같게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5.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시설은 이용노인에 대한 이용료 외 기타비용부담액 (비급여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식사 재료비

나. 이. 미용서비스 (단, 자원봉사자 및 시설직원이 직접제공시 별도로 청구는 하지 않는다.

다.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라. 경관급 이용자에 대해 제공되는 유동식 및 기타비용을 실비로 청구한다.

6. 급여제공자, 입소자, 보호자(신원 인수인) 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급여제공자의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협조의무

(단, 외출 및 병원입원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3) 표준이용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제공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 청결, 유지관리 의무

나. 입소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납부 의무
-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의무
- 4) 시설규칙 이행의무

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3)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5)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6)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나)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2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마. 시설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바.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사.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아. 입소상담시 허위로 상담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 자.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 신청을 하였을 때
- 타.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파.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제 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입소자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서비스는 예외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나.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7. 이용료 청구 및 납부

- 가.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 가.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의 세부사항

가.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
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프로그램 진행 등

나. 개인 활동 지원 :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라.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마. 기능회복훈련

1)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및 정
신기능훈련, 언어치료

바.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배설간호,

사. 그 밖의 처치 : 욕창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 및 가정간호사 진료 보조)

아. 시설환경관리 :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3.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 1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나.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4.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 1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제 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3.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4. 시설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나. 입소자가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붙임. 2022년 장기요양비용 안내

1.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단위 : 원)

등급	2021년 수가	2022년 수가 (4.10%)
1등급	71,900	74,850 (+2,950)
2등급	66,710	69,450 (+2,740)
3~5등급	61,520	64,040 (+2,520)

2. 본인 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 부담금 계약 사항

구 분		본인 부담금 (30일 기준)				
		일반 (20%)		인상 금액	경감 (12%)	경감 (8%)
		현행	2022년 1월~		2022년 1월~	2022년 1월~
본 인 부 담 금	1등급	431,400	449,100	17,700	269,460	179,640
	2등급	400,260	416,700	16,440	250,020	166,680
	3~ 5등급	369,120	384,240	15,120	230,544	153,696
비 급 여	식재료비 (간식포함)	300,000 1일 : 1식 3,000원 × 3회 = 9,000 / 간식 1,000원 × 1회 = 1,000				
합 계	1등급	722,400	731,400		569,460	479,640
	2등급	691,260	716,700		550,020	466,680
	3~5등급	660,120	684,240		530,544	453,696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청구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URL로 보내드리오니 서명하여 주실길 부탁드립니다.

※ 본인부담금 : 30일 이용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변동없음)